

시설 개·보수 현황

1. 시설 개·보수 기간 : 20 ~ 20

2. 시설 개·보수 내용

시설 개·보수 내역	세부내용	소요금액(천원)	비고
※ 공사 계약건 단위로 기재	세부공사 내용 기재 예) 바닥공사, 칸막이 공사 등		대금 지불 관련 서류 내역 (예: 세금계산서 등)

※ 시설 개·보수 증빙자료(사진 등) 제출

<시설 개·보수 증빙자료_사진 등>

현장 확인 점검표

신청인	업 소 명		사업자 등록번호	
	대 표 자 성 명		소재지	
	생산품목		보조금 신청금액	(예시) 10,000,000원
	시설 개선 현황 (위생설비 설치 포함)			
	현장 확인 결과			
업체 관계자	소속	직급(직위)	성명	날인 또는 서명

해썹(HACCP) 위생안전시설 개선자금을 신청한 업체에 대한 현장 확인·점검결과를 상기와 같이 보고합니다.

20

<점검자> 소속

직급

성명

(서명)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장 귀하

확 인 서

본 업소는 지원범위 및 조건을 확인하였으며 공고에 따른 집행 절차에 동의합니다. 또한 다음 사항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법령에 따라 보조금 교부결정취소, 보조금 반환, 제재부가금 징수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어떠한 처분도 이의 없이 받아들일 것을 확인합니다.

- 가.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 나.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 다. 보조사업자가 법령*의 규정, 보조금의 교부조건의 내용 또는 법령*에 의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처분에 위반한 경우
 - * 「HACCP 위생안전시설 개선자금 지원」(보조금) 사업 관련 법령
- 라. 해당 보조금 지원과 직접 관련된 전제조건이 사후에 충족되지 아니하는 경우
- 마.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계획으로 다른 기관으로부터 중복하여 보조금을 받은 경우
- 바. 지원제한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 * 이미 동 HACCP 위생안전시설 개선자금을 지원받은 업소 및 전년도 연 매출액 100억원 이상인 업체, 세금체납 중인 업소 등
- 사. HACCP을 일정기간(1년) 이상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

2022. . .

업 소 명 :

대표자 성명 : (인)

국고보조금 교부결정 통지서

수신 : ○○○(보조사업자)

1. 「2022년도 HACCP 위생안전시설 개선자금 지원」 사업 추진을 위한 보조금을 다음과 같이 교부결정 하오니 붙임 교부조건을 준수하여 보조사업 수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조 사업명 : HACCP 위생안전시설 개선자금 지원

사업 개요

○ 사업기간 : 2022년 2월 ~ 12월

○ 보조비율 : 50%

○ 사업내용 : HACCP 적용에 소요되는 위생안전시설 및 설비 등 설치자금 (최대 2천만원)의 50% 무상지원

예산 과 목 : 1000-1032-300-320-07(민간자본보조)

교부결정금액 : 금 원(원)

2. 위의 교부결정에도 불구하고, 다음사항을 위반할 경우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가.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나.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다. 보조사업자가 법령*의 규정, 보조금의 교부조건에 의함 또는 법령*에 의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처분에 위반한 경우

* 「HACCP 위생안전시설 개선자금 지원」 (보조금) 사업 관련 법령

라. 해당 보조금 지원과 직접 관련된 전제조건이 사후에 충족되지 아니하는 경우

마.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계획으로 다른 기관으로부터 중복하여 보조금을 받은 경우

사. HACCP을 일정기간(1년) 이상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

붙임 : 보조금 교부조건 1부.

2022년 ○○월 ○○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장

보조금 교부조건

1. 보조사업자(간접보조사업자 포함. 이하 “보조사업자”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포함됨)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과 기타 회계 관계법령 및 이 교부조건에 따라 보조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합니다.
2. 보조금은 보조사업 목적인 「HACCP 위생안전시설 개선자금」 사업비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3. 보조사업자는 교부신청서상의 자부담액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당해 보조사업에 전액 집행하여야 합니다.
4.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중요재산을 양도·교환 또는 대여하거나 담보로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 보조금 교부 이후 매매가 이루어진 경우,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는 매수자로 하여금 인증을 1년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하며
 - 이를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에게 HACCP 미유지 기간비례에 따라 보조금을 환수 할 수 있습니다.
5. 보조금과 관련된 제반 규정에 위반되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우리 처에서 시정을 명하거나 현지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6.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의 수행과 관련된 계산서, 증거서류, 첨부서류 등 사용내역을 증명하는데 필요한 서류를 자체규정에 따라 구비하여야 하고, 당해 보조사업 종료 연도부터 5년간 이를 보존하여야 합니다.
7.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관리
 - 교부받은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은 사업이 완료된 후 재산처분의 제한을 받습니다.
 - 교부받은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는 보조금 정산 시 재산목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중요재산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목적에 맞게 관리하여야 하며, 변동현황을 주기적으로 보고하고, 그 처분 등에 있어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8. 보조금을 거짓 신청 등으로 교부받거나, 교부목적과 다르게 사용 또는 법령 등에서 정한 교부 목적 등을 위배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법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금 교부결정취소, 보조금 반환, 제재부가금 징수 및 보조사업 수행배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9. 보조금을 지원받은 영업자는 일정기간(1년) 이상 해당 HACCP 인증을 유지하여야 하며, 이를 유지하지 아니하고(해썹 인증 반납 등) 보조금을 통해 획득한 시설을 이용하여 HACCP과 관련 없는 식품 등을 제조하는 등의 경우에는 HACCP 미유지 기간비례에 따라 보조금을 환수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의 사유로 HACCP을 일정기간(1년) 이상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을 환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영업부진(매출액 또는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간 대비 10% 이상 감소한 경우에 한함), 화재·천재지변에 따라 부득이하게 폐업한 경우
- 정기 조사평가 결과 부적합으로 인증이 취소된 후 3월 이내 재인증 받은 경우